

#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96호)

###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)

##### 가. 개정이유

-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제처의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및 오기 정비(안 제3조제7호, 제15조, 제17조, 제21조제1항, 제21조의2, 제35조)
- 공연장 사용료 납입의 방법 규정 삭제(안 제10조제2항)
- 사용자 판매수익 일부에 대한 사용료 추가징수 규정 삭제(안 제10조제3항, 제11조제1항, 제11조제3항, 제11조제4항)
- 공연장 사용취소 시 부담금 완화(안 제12조제1항제4호)
-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(안 제14조, 제31조)
- 생활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장 기준 신설(안 제32조제8호)
- 사용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내용 추가(안 별지)

## 다. 참고사항

### 1) 관계법령

- 가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나)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
- 다) 「민법」
- 라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###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#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3927(2026. 3. 27.)호]

### 4) 기타사항

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628호
  - 예고기간: 2026. 3. 20.~2026. 4. 9.(20일간)
 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 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3조제7호, 제15조, 제17조, 제21조제1항, 제21조의2, 제35조) 정의 규정 및 사용 절차, 보증금, 입장권 정산 등 기능이 약화되거나 중복 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한 사항으로, 조례 구조의 간결성과 법체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함.
- (안 제10조, 제11조) 납입고지서 및 입장료 연동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 시 일괄 납부 방식으로 정비한 사항으로, 징수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1조, 제12조, 제21조의2) 감면 규정의 표현을 정비하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, 공연 취소 시 위약금 비율을 20%에서 10%로 완화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적정함.

- (안 제14조, 제31조, 제35조)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, 시행규칙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\*으로 규율 가능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,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32조제8호) 체육시설 이용 신장 기준 신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한 사항으로, 현장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(별지 서식) 입장권 검인 및 정산 등 일부 서식을 삭제하고 주요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절차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함.

#### 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연장 및 체육시설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조문 간 충돌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